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제 8차

정기총회 자료

2016. 3. 4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화: 02-747-6887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94,
206호(와룡동, 동원빌딩)

홈페이지: <http://www.chsc.or.kr>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5년 사업 평가(안)

1. 총괄 평가

가. 내용적 발전을 위한 형식적, 조직적, 재정적 체계를 정비하였음

-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형식적 틀을 안정화하였음
- 회원을 확대하고 1인당 회원 회비를 인상하는 등 수입 구조를 재정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체계를 마련하였음
- 석사급 연구원 상근 체계에서 박사급 연구위원 상근 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 조직 운영 및 내용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나. 상근연구원 전환 및 체계 재정비를 위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 연구사업은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으로 진행

- 연구 활동은 이슈페이퍼 발간, 월례포럼, 소모임 운영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 과정 유지
- 이슈페이퍼는 3편 발간, 월례포럼은 5회 진행
- 소모임은 의약품과건강팀, 젠더와건강팀 활동 유지, 과학기술과건강팀 신설
-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대중 강좌 진행
-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공동 편집위원회를 구성, 격월간지 <의료와사회> 발행,

2. 사업, 분야별 성과와 한계

가. 연구 활동 : 전략적 방향에 따른 연구 내실화가 필요함

- <기업과건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 사회화하기로 전략적 방향을 설정했으나, 방향 설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 책임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음
- 소모임 내용 생산의 안정화와 내실화가 필요함. 소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연구영역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함.
- 메르스 문제에 대한 매체 기고 및 언론 대응은 건강과대안이 가진 전문성과 지향점을 잘 보여주었으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대중 강좌도 성과있게 진행됨. 따라서

기준에 갖추고 있는 역량을 외화하는 기획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나. 회원간 소통 및 토론 기회 확대와 안정화

- 온라인 뉴스레터,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회원간 소통과 토론을 유지해옴.
- 2015년 하반기 월레포럼은 정례화되면서 회원간 소통의 장으로 또한 다른 연구분야 실천활동과의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함
- 야옹선생의 웹툰은 프레시안, 의료와사회 등에 연재됨. 건강과대안 홈페이지에 게시되던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웹툰에 대한 구독과 유용성에 대한 반향이 있음. 대중과 함께하는 좋은 건강교육의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임.
- 회원 주소록 및 연락망이 재정비 되어 일상적 소식을 안정적으로 전하고 문자 안 내문 발송을 시작함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5년 결산(안)

표 1 대차대조표(2015.1.1 - 12.31) (단위:원)

자산	금액	백분율	부채	금액
유동자산	11,730,763	59.5%		
사무실보증금	8,000,000	40.5%		
합계	19,730,763	100%	부채합계	0
			순자산	19,730,763

표 2 손익계산서(2015.1.1 - 12.31) (단위:원)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이월	764,540	1.5%	인건비	21,006,300	55.6%
회원회비	36,773,905	74.2%	사업비	3,722,300	9.8%
후원회비	11,883,000	24.0%	운영비	13,084,711	34.6%
금융소득	3,129	0.01%			
수익사업	119,500	0.2%			
합계	49,544,074		합계	37,813,311	100.0%
			이월	11,730,763	

표 3 수입 부문 예산 대비 결산 비교

수입 항목	2015년 예산	2015년 결산	예산 대비 결산 비율
회원회비	45,500,000	36,773,905	80.8%
후원회비	9,600,000	11,883,000	123.8%
기타	745,540	887,169	119.0%
계	55,845,540	49,544,074	88.7%

표 4 지출 부문 예산 대비 결산 비교

지출	2015년 예산	2015년 결산	예산 대비 결산 비율
인건비	30,000,000	21,006,300	70.0%
사업비	6,000,000	3,722,300	62.0%
운영비	19,000,000	13,084,711	68.9%
총계	55,000,000	37,813,311	68.8%

<참고> 2014년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백분율	항목	금액	백분율
전년이월	8,890,572	19.8%	인건비	26,208,600	59.2%
회원회비	27,073,845	60.2%	사업비	3,959,600	8.9%
후원회비	9,035,000	20.1%	운영비	14,073,794	31.8%
금융소득	7,117	0.0%			
계	45,006,534	100%	계	45,006,534	100%
			이월	764,540	

2015년 결산 감사보고서(안)

총 평

2015년 12월 31일 현재 결산서를 기준으로 2015년 회계기간 동안 매월 회계장부,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대조, 확인 하여 수입, 지출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다른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특이하게도 117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았습니다

전년 대비 회원이 21명이 늘어나 회비수입이 많이 증가하였고 대외사업 등을 통한 후원금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업비 지출은 변동이 없어 강좌나 출판 등 지속적인 활동이 정체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에 2016년도에는 회원증대, 연구프로젝트 사업 수행, 출판사업 등 수입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연구인력 충원을 통해 대 회원, 대 시민 강좌나 포럼 등 적극적인 대내외활동을 통해 재정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문별 평가

1. 수입

‘건강과 대안’ 2015년 총 수입은 4954만원으로 2014년 4500만원에 비해 약 4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원수입이 2014년 2700만원에서 3670만원으로 괄목할 만큼 증가하였으며, 후원회비 수입도 900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원이 21명 늘었으며, 회비 인상 등으로 회비 수입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의료연대, 여성재단, 학생교육사업 등 대외활동에서의 후원금으로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위해서는 회원, 후원회원 가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연구, 강좌, 출판, 교육 등을 통해 전체 수입의 24% 정도인 후원금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지출

‘건강과 대안’ 2015년 총 지출은 3780만원으로 2014년 4400만원에 비해 6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1300만원 사업비 372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상근연구원 퇴직과 신입 상근연구원의 출산휴가로 인해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201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015년 예산대비 62%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한해 연구 및 활동 관련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활동이 정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올 한해에는 연구인력 충원 등을 통해 대 회원 강좌나 포럼, 대 시민 교육 활동, 새로운 연구과제 개발 등 활발한 대내외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회계처리

매 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월별 수입과 지출 보고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후원회비 수입을 한꺼번에 합치지 말고 각 연대사업 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기별 또는 반년 보고서 제출하여 임원, 회원, 연구위원 전체가 재정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조직 재정을 위한 방안은 함께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건강과 대안’의 임원, 회원, 연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4일
감사 정성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6년 사업 계획(안)

1. 사업 목표 및 방향

- 전략적 이슈에 대한 연구 내용 심화
-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체계 확립
- 소모임별 연구/활동의제에 대한 안정적 내용 생산

2. 분야별 사업 계획

가. 전략적 이슈에 대한 연구 내용 심화

- [기업과건강] 건강, 생명, 웰빙산업과 자본의 전략 연구를 중점 과제로 진행
- 연구위원 및 운영위원들이 중점 과제 연구 진행에 일정 정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중점 연구를 진행
-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관련 주제에 따른 '연구위원 회의'를 신설해 연구의 진척 정도를 점검하여 실질적 연구 진척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마련
- 상근연구원이 시기별 이슈가 되는 보건의료나 건강관련 의제를 이슈페이퍼로 정리해 발간하도록 해 현실운동과의 접목을 놓치지 않도록 함

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체계 모색

- 정부, 단체, 노동조합 등 외부 프로젝트 중 정부의 프로젝트는 제외하되, 진보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프로젝트는 수행하는 것으로 함.
-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기준, 상임 연구원 1인+ 비상임연구원 1인 체제, 자원활동 연구원을 모집하여 운영함.
- 더불어, 회원 네트워크 및 팀별 활동내용을 주기적으로 이슈페이퍼로 외화하도록 장려함.

다. 소모임별 연구/활동의제에 대한 안정적 내용 생산

- 젠더와건강팀 : 피임/낙태 이슈,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 젠더와 노동/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토론을 활성화함.
- 과학기술과건강팀 : 다양한 영역의 이슈를 일별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집중 연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토론을 진행
- 의약품과건강팀 : 의료정보화와 인권, 의약품 영역 중 과학기술 이슈 영역 등 연구 주제의 변환 모색.
- 건강과대안이 전체적으로 주요한 모니터를 진행하고자 하는 ‘biomedicalization’ 관련 의제들은 공동세미나 등으로 소모임간 소통을 강화함.

라. 연구 내용 외화 방안

- 이슈페이퍼 발간 정례화, 대중용 소책자 발간, <Morbid Symptom> 출간
- 독자적 대중 강좌/세미나 진행
-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격월간지 <의료와사회> 지속 발간
- 청소년을 주된 독자로 하는 의료/건강 정책 대중서 시리즈 기획, 발간

[참고자료] 2016년 핵심 연구 주제 연구계획서
생명, 건강, 웰빙산업의 자본 전략(가안)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생명, 건강, 웰빙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생산으로 인한 이윤 축적의 복잡성
 - 착취인가, 강탈인가
 - 이미지, 욕망, 지식 등이 가치를 생산하는가
- 생명, 건강, 웰빙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특수성 : 무제한적 상품화의 가능성
 -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한선이 있을 수가 없다
 - 한 개인의 신체적 상태에 대해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새롭게 의학적으 만들어 낼 수 있다.
 -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이자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 이윤 추구 행위를 생명, 건강, 웰빙의 언어로 정당화할 수 있다.
- 생명, 건강, 웰빙 산업의 축적 전략
 - 과학기술 투자(R&D, 대학) : 공공 자산과 지식을 활용한 축적
 - 투기(금융시장) : 장밋빛 전망에 근거한 축적
 - 광고(매스미디어) : 욕망의 정치학에 근거한 축적
 - 국가 의료 체계에 개입(정부조달, 보험구매계약 등) : 공공재정 축내기, 제도 안에서의 자본 축적, 공공/민간의 경계 흐리기
 - 제3세계에 지적재산권 및 공공조달에 대한 압력으로 시장 개척
- 위와 같은 이유로 점차 생명, 건강, 웰빙 산업은 자본주의 최후의 산업이자 최적의 이윤 축적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
-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 미용, 웰빙을 아우르는 자본의 착취/강탈의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 전략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한국의 생명, 건강, 웰빙산업의 실태 파악 : 상품 생산 종류, 매출, 이윤율 등
- 한국의 생명, 건강, 웰빙산업의 축적 전략 파악

- 한국의 생명, 건강, 웰빙산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정립

3.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생명, 건강, 웰빙산업의 개념, 범위, 이윤 축적 매커니즘 등에 대한 문헌 연구

- The Bioeconomy as Political Project : A Polanyian Analysis,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2014)

- 칼 폴라니 관점에서 OECD의 bioeconomy 프로젝트를 비판적으로 분석
- Bioeconomy는 경제적 행위 및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에 기반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주장을 펴

- Theorizing the Bioeconomy : Biovalue, Biocapital, Bioeconomics or . . . What?,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2013)

- bioeconomy에 대한 논의가 “bio 패티시즘”에 빠져있다는 논지를 펼치며, 이론적 정리를 모색

- Assembling ‘the bioeconomy’: Exploiting the power of the promissory life sciences, Journal of Sociology(2015)

- bioeconomy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 bioeconomy가 미래에 대한 약속의 성격을 띤 거대 기획이며 실패의 가능성이 많음을 지적

- Ben Fine, The Political Economy of Diet, Health and Food Policy(2013)

- 식품 산업, 음식, 섭식 장애, 식품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Health as a meaningful social practice, Health(2006)

- 건강에 대한 문화사회적 접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

나. 한국의 생명, 건강, 웰빙산업 실태 파악

-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 및 업계동향 자료 분석

- 해외 선진사례 소개를 통한 국내 향노화 클러스터 고찰
- 고령자의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현황 분석
- 고령친화 의약품 시장 및 수요 현황 분석
- 국내 의료관광 연관산업 동향 및 전망
- ICT헬스케어 융합R&D와 산업융합(M&A) 특성분석

- 특허분석방법론을 통한 국내 보건산업 융복합 동향분석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2014년 헬스케어 융합 주요 이슈 도출
- 국내 주요기업의 HT융합 신사업 진출현황 분석
- 헬스케어 산업의 창업 동향과 활성화 방안

다. 한국의 생명, 건강, 웰빙산업 축적 전략 분석

4.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중심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이슈페이퍼 등을 생산
- 문헌 연구 결과 특정 세부 과제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 계획을 작성하고 연구 재정 조달을 위한 노력 진행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6년 예산(안)

수입			
항목	2016년	2015년	전년대비비율
회원회비	47,000,000	45,500,000	103.3%
후원회비	6,000,000	9,600,000	62.5%
기타	12,000,000	745,540	1609.6%
계	65,000,000	55,845,540	116.4%

지출			
항목	2016년	2015년	전년대비비율
인건비	44,000,000	30,000,000	146.7%
사업비	6,000,000	6,000,000	100.0%
운영비	15,000,000	19,000,000	78.9%
계	65,000,000	55,000,000	118.2%

■ 수입 항목 예산 책정 근거

- 회원회비는 2015년 10월-12월 3개월 월평균 회계수입(약 350만 원)을 바탕으로 하였고, 500만 원 정도의 개인 후원을 예상하여 산정하였음
- 수입항목 중 후원회비는 반핵의사회 월세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62.5% 수준으로 산정하였음
- 기타 항목은 전년도 이월금인 11,730,763원에 이자소득, 기타 수익을 더해 산정하였음

■ 지출 항목 예산 책정 근거

- 임금은 상근연구위원 1인, 반상근연구위원 1인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반상근연구위원의 임금은 월 100만 원으로 산정하였음
- 사업비는 2015년 지출액인 3,722,300원은 과소지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음
- 운영비는 2015년 지출액인 13,084,711원은 과소지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비 인상액을 반영하고 상향 조정하였으나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78.9%수준으로 책정하였음

정관 개정에 대한 건

2016년 정기총회를 통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의 정관을 일부 개정하고자 이에 정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는 바임.

정관 일부개정안

제안연월일 : 2016. 3. 4

제안자 : 대표

1. 제안이유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에 회원 회비로 기부금을 지급한 회원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과대안이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자 정관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또는 연구공동체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제4조의2)

나.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공개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을 신설(제34조의2)

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함(제36조)

정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설)</u></p>	<p>제4조의2 (공직선거 관여 금지)</p> <p>① 연구공동체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연구공동체의 대표는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신설)</u></p>	<p>제34조의2 (결산보고서 등의 공개)</p> <p>① 대표는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p> <p>⑥ 대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구공동체의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게재하여야 한다.</p>
<p>제36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공동체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다른 <u>비영리법인</u>에게 <u>기증</u>한다.</p>	<p>제 36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공동체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다른 <u>비영리단체</u>에게 <u>귀속</u>한다.</p>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관

2008년 10월 18일 제정
2015년 3월 28일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는 그 명칭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하 연구공동체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연구공동체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는 국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1. 이 연구공동체는 전인류의 건강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는 건강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히 본 연구공동체는 세계화 등 새로운 사회 현상에 따른 건강 문제, 전지구적 건강 문제, 건강불평등 등에 대한 연구 영역에 집중하고, 다학제간 통합 연구를 지향한다.

제 4 조 (사업)

이 연구공동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올바른 국민여론의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와 교육, 출판 등의 사업
2. 건강사회의 모형개발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연구
3.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물, 정기간행물 간행 및 홍보사업
4. 정부, 국회 및 기타 요로에 대한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5. 건강사회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나라 단체와의 국제 연대
6. 기타 연구공동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1. 본 연구공동체의 회원은 본 연구공동체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연구공동체의 사업에 적극 참여 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

한 자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자료회원 등으로 한다.

3. 후원회원과 자료회원은 이 연구공동체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의결권

다. 본 연구공동체가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본 연구공동체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3.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 연구공동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본 연구공동체의 소속지부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9 조 (징계)

1. 본 연구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의 회칙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본 연구공동체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다.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라.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과 관련 직책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본 연구공동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표
- 나. 부대표
- 다. 감사
- 라. 편집위원장

제 11 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1. 임원은 본 연구공동체의 회원으로서 공직에 있지 않는 자라야 한다.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 3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대표, 부대표,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대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부대표, 편집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2. 임기 중 보선되는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대표와 부대표의 임무)

1. 대표는 본 연구공동체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부대표가 대행한다.

제 15 조 (감사의 임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공동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공동체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편집위원장의 임무)

편집위원장은 대표의 감독 하에 연구공동체의 출판, 편집 업무를 총괄한다.

제 17 조 (명예대표)

1. 명예대표는 본 연구공동체 역대 대표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대표는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또 본 연구공동체의 발전에 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18 조 (고문)

본 연구공동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9 조 (자문위원)

본 연구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0 조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본 연구공동체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21 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는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발송하여 소집한다.

제 22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 조 (성원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4 조 (총회의 제척사유)

대표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대표 또는 임원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임 원 회

제 25 조 (지위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공동체의 집행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부대표, 편집위원장, 감사를 포함하여 대표가 임명하는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6 조 (소집과 의결)

1. 정기운영위원회는 대표가 1개월마다 소집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7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결산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주소지 변경 의결
7. 정관 변경 심의
8. 정관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재개정
9. 회원의 징계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1. 지부의 창설 및 승인
12. 각 지부의 운영 및 제반 활동의 총괄
13. 기타 대표가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6 장 연구조직과 위원회

제 28 조 (연구원)

1. 본 연구공동체의 연구 사업을 위하여 본 연구공동체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연구원을 임명한다.
2. 연구원의 편제, 임무, 자격, 노동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9 조 (연구위원 위촉과 각종 위원회의 설치)

1. 대표는 연구 사업을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대표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성)

1. 연구공동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단체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1 조 (재산의 관리)

1. 본 연구공동체의 재산은 대표가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2 조 (예산의 결산)

1. 대표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는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년 결산안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회계년도)

본 연구공동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 (해산)

본 연구공동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6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공동체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 37 조 (정관 개정)

연구공동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38 조 (규칙 제정)

연구공동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9 장 부 칙

1. 본 연구공동체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연구공동체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016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들은 연구보고서 발간 시 연구위원으로 직함을 통일하기로 함.

대표

주 영수 (한림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부대표

문 현아 (정치학 박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강사)

우 석균 (가정의학전문의, 경제학 박사수료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운영위원 (가나다 순)

김 병수 (과학기술학 박사,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김 의동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지부 회장)

김 주연 (가정의학전문의, 대전충남인의협 전 연대사업국장)

박 건 (사회학 박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박 준규 (인류학 박사, 한양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박 주영 (보건학 석사, 전 건강과대안 상근연구위원)

변 혜진 (사회학 박사수료,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리 병도 (사회학 박사수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윤 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

이 상윤 (직업의학전문의,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 수정 (약사, 건강과대안 의약품건강팀 팀장)

이 승홍 (의사, 서울시립은평병원 정신의학건강과 전공의)

정 성훈 (치과의사, 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조 홍준 (울산의대 교수, 전 건강과대안 대표)

최 규진 (의사학 박사,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